

# [ 대출안심서비스특약 대출기관 변경신청서 ]

## ■ 고객작성란

증권번호 : \_\_\_\_\_

### \* 신청 필수정보

	변경전	변경후
대출기관		
대출지점		
대출종류		
대출금액	원	원
대출일자	년 월 일	년 월 일

### \* 선택정보

대출계좌번호	
대출기간	

계약변경에 따른 유의사항	해당항목
① 대출안심서비스란 이 서비스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보험금 이내에서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상당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금전채무를 상환해 드리는 서비스로 대출안심서비스특약 신청 시 보험수익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용제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관으로 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
② 계약자는 대출안심서비스 신청 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채무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
③ 1~4의 내용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출안심서비스는 그때부터 종료됩니다. 1. 주계약이 해지,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된 경우 2. 보험기간 중 이 서비스특약을 부가한 주계약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3.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4. 계약자가 회사에 정보를 제공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소멸된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
④ 이 서비스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 경우에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 수익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, 그 외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
⑤ 대리접수 건 중에 중요 계약변경(수익자 변경)은 고객의 손해/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계약자의 변경의사 및 유의사항을 전화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

\* 세부사항의 적용은 약관이 우선하며, 자세한 내용은 대출안심서비스특약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인/계약자	서명(인)	주민등록번호	-
연락처	자택)	주소	(자택 <input type="checkbox"/> 직장 <input type="checkbox"/> )
	핸드폰)		
피보험자	서명(인)	친권자/후견인	서명(인)
주민등록번호	-	친권자/후견인	서명(인)

신청일 : 년 월 일

## ■ 보험회사 작성란 \* 상기 변경 · 정정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신청권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변경 · 정정 신청을 의뢰하며, 사고발생 및 규정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.

	담당	결재자	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접수란
결재			